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 참여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기업 해외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년 4월 ~ 11월까지
- 모집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기업성장을 희망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스타트업, 외투기업 등
- 모집규모: 최대 10개사 이내
-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동일 과제로 정부 및 지자체의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

2. 지원금액

- 지원금 : 업체별 최대 1,850만원 이내 지원
- 자부담 : 지원금 이외 비용(부가가치세 등)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화 지원(세부내용은 운영지침 참고)

구분	지원내용(예시)	한도액	비고
지적재산권 및 인증비용	· 지적재산권(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비 지원 등 · 시험성적서 수수료, 인증 수수료 등	총 사업비의 50%이내	
홍보 및 투자유치활동	· 기업소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동영상(영문자막 포함) 제작비, 카달로그, SNS홍보물 등 (영문자막 포함) 제작비 지원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컨설팅	· 해외진출, 기술도입 및 투자금 도입을 위한 컨설팅, 멘토링 비용 지원 · 기업가치평가 등 관련 법률 자문료 지원		
운영비	· 사업비 사용분 정산에 따르는 회계법인 정산 비용 ·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료 지원		
기타	· 위에서 명기되지 않았으나, 투자유치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선정 심의를 통해 지급여부 판단 (가능 예시)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해외여비(항공료), 해외 전시회 참여를 위한 부스임차비, 시설장치비, (불인정 예시) 해외투자유치활동을 위한 일반체류경비(식비, 숙박비 등)	총 사업비의 50%이내	· 선정절차에서 타당성을 판단해 지급결정 가능하나 비용과 규모는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되며 정산 시 당초 승인 내용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불인정 및 환수 조치

※ 지원금은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으로 신청 및 지원하며, 또한 부가세 등 제세공과금은 지원업체가 자부담하여야 함

4. 선정절차

- 2단계로 평가하며, 선정결과 개별통보

· 1차 서면평가(4월 9일 예정), 2차 발표평가(데모데이 형태, 4월 13일 예정)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동 가능

5.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년 3월 24일(수) ~ 4월 6일(화) 17:00, 총 2주간

- 접수방법 : 경기인베스트플랫폼 온라인접수 (<https://www.gip.or.kr:444/frt/mai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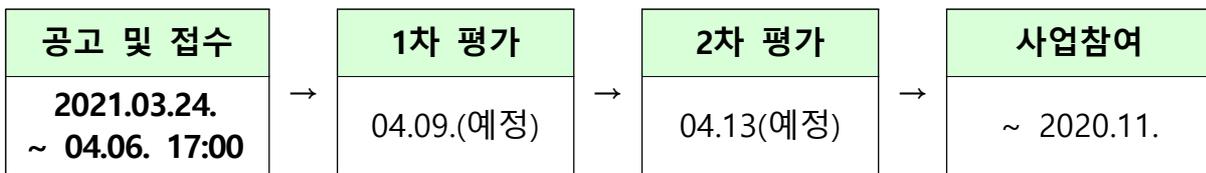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우편 접수 불인정. 지정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만 인정

○ 사업지원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 ②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증, 외투기업확인서 - 각 1부
- ③ 보유기술에 대한 설명자료 및 자격증 사본 등(해당자에 한함) - 각 1부
- ④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제3호 서식] -1부

※ 절차별 제출서류 및 양식은 [사업운영지침](#) 참고

5. 향후일정



※ 세부일정은 접수결과 및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연락처 : 031-776-4826
- 이메일 : jyk81@gsa.or.kr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